



서 울 행 정 법 원

2022.01.20

제 7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72733 수당 등

원 고 별지1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영두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2. 1. 20.

주 문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별지2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22. 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잦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연손해금을 '2015. 10. 1.부터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하는 외에 나머지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도소, 구치소 소속 전·현직 교정공무원으로, 교정업무의 성격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현업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으로 분류된다.

나. 원고들은 3부제¹⁾, 4부제²⁾ 교대근무를 하거나 일근 형태로 근무하면서 2012. 9.부터 2015. 7.까지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개인별 근무시간 산출서' 기재와 같이 초과근무 하였다(원고들은 피고와 소송 외에서 원고들의 시기별 근무형태, 근무시간, 직급,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관하여 정리한 결과가 갑 제17호증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는다³⁾).

다. 피고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한 뒤 여기에 같은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그 중 일부 수당만을 지급하였다.

1) 야근(09:00 ~ 익일 09:00), 비번, 일근(09:00 ~ 18:00)

2) 야근(18:00 ~ 익일 09:00), 비번, 윤번일근(4부제 근무자를 2개조로 나누어 1개조는 09:00 ~ 18:00 근무, 나머지 1개조는 휴무), 당무일근(4부제 근무자 모두가 09:00 ~ 18:00 근무)

3) 원고들 제출 2017. 5. 29.자 참고자료, 원고들 제출 2017. 10. 25.자 준비서면, 이 법원의 2021. 9. 2.자 석명준비명령, 피고 제출 2021. 11. 9.자 참고서면 등 참조





▣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후략)
-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생략)와 같다.
-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교정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참조). 원고들은 2012. 9.부터 2015. 7.까지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을 구한다(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의 병급을 구하는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⁴⁾).





음성출력용바코드

나. 국가공무원법 제47조는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대통령령인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초과근무 중 시간외 근무에 관하여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예규)5)은 아래와 같이 현업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방식을 정한다.

2) 현업대상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

(1) 월 지급시간 : 예산의 범위 내

(2) 지급시간수의 계산

(가)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 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하여야 하며, 1시간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일정기간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휴식시간(월간)
-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 * 현업대상자가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현업대상자들의 근무형태 등을 고려 하여 적정한 휴식시간(식사시간, 휴식시간, 수면시간 등)을 부여하여야 함
- * 등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급지급 불가
- * 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산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른 휴가기간 및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기간을 제외함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실제 초

4) 원고들 제출 2021. 3.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원고들 제출 2021. 5. 21.자 준비서면 참조

5) 원고들이 구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간 동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당액 이외에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92호, 2012. 1. 12. 시행, 갑 제8호증)을 인용한다.



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는 식사시간(아침, 점심, 저녁식사 시간)과 휴식시간(야간 휴게시간)은 원고들의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식사·수면·휴식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훈령으로 교도관 직무규칙(갑 제2호증)을 정하고 있는데, 제8조는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18조 제2항은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식사 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 있다'고 한다(달리 식사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은 2016년경 '보안·출정 등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현업근무자는 식사 및 휴식시간에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인정되므로 중식·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하였다(인정대상 근무지는 갑 제26호증 제6쪽 참조).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고는 원고들이 상황대기근무[보안야근자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근무형태, 보안 야간근무 운영지침(법무부예규, 갑 제4호증) 제2조 제7호 참조]하는 것을 고려하여, 야근 시 3부제 근무자(09: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는 24시간을, 4부제 근무자(18:00부터 익일 09:00까지 근무)는 15시간



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보고 있고(위 지침 제4조, 제22조), 소장은 긴급 상황 등이 발생하는 경우 비번이나 휴무중인 보안야근자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위 지침 제14조).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은 아침식사, 저녁식사 뿐만 아니라 점심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구체적인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들의 실제 총 근무시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휴일근무시간, 이미 지급받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그 결과는 갑 제17호증 기재와 같다⁶⁾), 식사시간 및 휴식시간이 모두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원고들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원금'란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각 월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기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갑 제8호증)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시기를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의 보수지급일'로 정한다]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무 월의 다다음달 1일을 기산일로 하여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별지2 '이자'란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이미 이자를 계산한 마지막 날(2015. 9. 30.)의 다음날인 2015. 10.

6) 원고들은 갑 제17호증 개인별근무시간산출서에 기재된 근무일수와 조출 등 기타 초과근무시간을 근거로 하여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3부제 근무를 한 경우 [주간근무(일근)일수 × 9 + (당무 24시간 근무일수 × 24) + 조출 등 기타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4부제 및 일근 형태로 교대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간 근무일수 × 9 + 야간 근무일수 × 15 + 조출 등 기타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하였다. 총 근무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당해 월의 근무시간 - (연가, 병가, 공가, 특휴, 교육시간), 외출 및 조퇴시간, 이미 실제 수령한 시간외근무시간, 휴일수당을 지급받은 일수 × 8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을 계산하였다.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들은 당초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의 병급을 주장하였으나, 관련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당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⁷⁾하므로, 가집행선고는 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국현

김국현



판사

이승운

이승운



판사

정현기

정현기



7) 이 법원이 2020. 8. 4. 행정소송법 제43조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216), 헌법재판소에 2020헌가12 사건으로 계속 중이다.

